[무배당 AXA생활안심종합보험2208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의 종류

장기 - 장기상해보험

2. 보험종목의 명칭 등

무배당 AXA생활안심종합보험2208

(1종: 만기환급형, 2종: 순수보장형)

3. 보험의 목적

가. 피보험자의 신체

나. 동산 및 부동산(순수하게 원형대로 존재하는 토지 제외)

다. 자동차에 관련하여 생기는 피보험자의 각종 위험에 관한 피보험자이익

라. 비용손해

마. 법률상의 배상책임

4.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 분</th><th rowspan="2">보험
기간</th><th rowspan="2">보험료
납입기간</th><th rowspan="2">가입
나이</th><th rowspan="2">보험료
납입주기</th></tr>
<tr></tr>
<tr><td>보통
약관</td><td>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3~100%)</td><td rowspan="16">3 / 5
/10년</td><td rowspan="19">전기납</td><td rowspan="15">18세
~80세</td><td rowspan="19">월납
연납</td></tr>
<tr><td rowspan="15">특별
약관</td><td>화재손해(실손보상)</td></tr>
<tr><td>붕괴침강및사태손해(실손보상)</td></tr>
<tr><td>도난손해(일반가재)</td></tr>
<tr><td>급배수설비누출손해(일반가재)</td></tr>
<tr><td>지진손해(비례보상)</td></tr>
<tr><td>전기손해(비례보상)</td></tr>
<tr><td>풍수재손해(특수건물,실손보상)</td></tr>
<tr><td>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td></tr>
<tr><td>1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td></tr>
<tr><td>신체손해배상책임(특수건물)</td></tr>
<tr><td>화재대물배상책임(특수건물)</td></tr>
<tr><td>임차자(화재,폭발파열,소요노동쟁의)
배상책임(비례보상)</td></tr>
<tr><td>화재배상책임(500m^{2}이하)</td></tr>
<tr><td>일상생활배상책임</td><td colspan="2">3 / 5년</td><td>18세
~80세</td></tr>
<tr><td rowspan="2">(갱신형)일상생활배상책임</td><td>최초</td><td>5년</td><td>18세
~80세</td></tr>
<tr><td>갱신</td><td>5년</td><td>23세
~85세</td></tr>
<tr><td>붕괴침강및사태상해사망후유장해
(3~100%)</td><td rowspan="4">3 / 5
/10년</td><td rowspan="4">18세
~80세</td></tr>
<tr><td>단지내상해사망후유장해(3~100%)</td></tr>
<tr><td>추락사고상해사망후유장해(3~100%)</td></tr>
<tr><td>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td></tr>
</table>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3 / 5 /10년	전기납		월납 연납
	일반상해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				
	일반상해골절수술				
	5대골절진단				
	5대골절수술				
	일반상해흉터복원수술				
	중대한특정상해수술(뇌,내장손상)			18세 ~60세	
	일반상해화상진단			18세 ~80세	
	일반상해화상수술				
	화재상해추상장해				
	중증화상및부식진단			18세 ~70세	
	일상생활강력범죄발생				
	깁스치료비				
	운전중교통상해사망(체증형,5년간매월지급)(자가용)				
	운전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체증형,5년간매월지급)(자가용)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자가용)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자가용)				
	신주말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자가용)				
	자동차사고성형수술(자가용)				
	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18세 ~80세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Ⅴ(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6주미만)(자가용)				
	운전중사고벌금(대인)(3천만원한도)(자가용)				
	운전중사고벌금(대인)(2천만원한도)(자가용)				
	운전중사고벌금(대인)(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자가용)				
	운전중사고벌금(대물)(자가용)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자가용)				
	운전중보복운전피해보장(자가용)				
	가족화재벌금				
제도성 특별약관	건물소유자의종업원배상책임부담보추가	-	-	-	-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보험료자동이체납입				
	제재위반 부담보				
	지정대리청구서비스				
	장애인전용보험전환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해당 목적물의 건물급수, 관리상태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5.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6.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7.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1) 안전한우리집 할인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건물) 내에 '7.(1).가.'에서 정한 "안전한우리집할인 적용가능한 화재예방기구 및 장치"가 설치(배치)되었음을 회사에 고지한 경우에 한하여, 차회부터 '7.(1).나'에서 정한 "안전한우리집할인율 적용대상 특별약관"의 영업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할인적용.

	1개 설치(배치)	2개 설치(배치)	3개 설치(배치)	4개이상 설치(배치)
안전한우리집 할인율	5%	7%	10%	12%

가. 안전한우리집할인 적용가능한 화재예방기구 및 장치

· 소화기
· 스프링클러
· 화재감지기
· 인덕션 또는 하이라이트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 가스누출감지기 및 가스자동차단기

나. 안전한우리집할인율 적용대상 특별약관

· 화재손해(실손보상)
· 붕괴침강및사태손해(실손보상)
· 지진손해(비례보상)
· 전기손해(비례보상)
· 신체손해배상책임(특수건물)
· 화재대물배상책임(특수건물)
· 임차자(화재,폭발파열,소요노동쟁의)배상책임(비례보상)
· 화재배상책임(500m^2이하)

다. 세부사항

- 보험기간 내에 보험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변경된 보험목적 내에 '7.(1).가.'에서 정한 "안전한우리집할인 적용가능한 화재예방기구 및 장치"가 설치(배치)되었음을 회사에 고지한 경우에 한하여, 차회부터 '7.(1).나'에서 정한 "안전한우리집할인율 적용대상 특별약관"의 영업보험료 할인을 적용함.
-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7.(1).가.'에서 정한 "안전한우리집할인 적용가능한 화재예방기구 및 장치"에 대하여 허위로 고지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과 관계없이 차회보험료부터 할인을 중지 할 수 있음.

(2) 내진등급에 따른 보험료 할인

-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

8. 갱신특약에 관한 사항

가. 대상 특별약관

- (갱신형)일상생활배상책임

나. 갱신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상기 특별약관은 갱신주기(5년)마다 자동갱신 됨
- 갱신보험료의 계산
- 상기 특별약관에 적용할 보험료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이하 '보험료율 제도 또는 보험료'라 함)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율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함
- 갱신보험료의 안내
- 회사는 상기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보험료를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함

다. 보험료 납입방법

- 상기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전기간 납입하는 것으로 함

9. 보험료운영에 관한 사항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보장성보험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내로 운영함

10.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시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를 적용

11.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며,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한 선납보험료는 해당 계약 해당일까지 평균공시이율로 부리·적립함

12. 추가적립보험료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3.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4. 보험계약대출이율에 관한 사항

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이 계약의 적용이율 + 1.5%」로 함

15.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6. 조건부 인수를 위한 특별약관

(1) 건물소유자의종업원배상책임부담보추가 특별약관

이 추가 특별약관은 피보험자인 건물소유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경우 피보험자의 요청에 따라 『신체손해배상책임(특수건물) 특별약관』을 체결할 때에 부가됨.

(2)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약관

보험계약당시 또는 보험기간 중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함으로 인하여 이륜자동차의 운전과 관련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상해를 입을 위험 정도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됨.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약관을 부가시에는 이륜자동차 운전을 제외한 직업 또는 직무에 해당하는 상해급수를 적용함.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음.

17. 계약내용이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계약 등에 관한 사항

- 대상담보

·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Ⅴ(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6주미만)(자가용) · 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 · 운전중사고벌금(대인)(3천만원한도)(자가용) · 운전중사고벌금(대인)(2천만원한도)(자가용) · 운전중사고벌금(대인)(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자가용) · 신체손해배상책임(특수건물) · 화재대물배상책임(특수건물) · 화재배상책임(500m^2이하)

가. 계약내용이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님에 따라 관련 법률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적용함. 단,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1)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2)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3)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
4) 기타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나. 회사는 가.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알림.

다. 가.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가입금액 및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계약 체결시 계약자에게 안내함.

라. 회사는 가.에 따라 보장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최신의 통계를 반영하여 보험료 산출기초율을 재산출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적용함.

: 계약내용 변경일부터 재산출된 보험료산출기초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보험금이 변경될 수 있음

마.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거나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음.

18. 기타

(1) 운전중교통상해사망(체증형,5년간매월지급형)(자가용) 또는 운전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체증형,5년간매월지급)(자가용) 담보를 가입할 경우에는 두 가지 담보를 동일한 가입금액으로 동시에 가입하여야 함.

(2) 아래에 정한 특별약관은 보험목적이 주택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음.

· 화재손해(실손보상) · 붕괴침강및사태손해(실손보상) · 도난손해(일반가재) · 급배수설비누출손해(일반가재) · 지진손해(비례보상) · 전기손해(비례보상) · 풍수재손해(특수건물,실손보상) · 신체손해배상책임(특수건물) · 화재대물배상책임(특수건물) · 임차자(화재,폭발파열,소요노동쟁의)배상책임(비례보상) · 화재배상책임(500m^2이하) ·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 1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3) 보험목적이 피보험자가 임대해준 부동산인 경우, 아래에 정한 특별약관 가입이 불가능함.

· 임차자(화재,폭발파열,소요노동쟁의)배상책임(비례보상) ·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 1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 도난손해(일반가재) · 급배수설비누출손해(일반가재)

(4) 풍수재손해(특수건물,실손보상) 특별약관, 신체손해배상책임(특수건물) 특별약관 및 화재대물배상책임(특수건물) 특별약관은 특수건물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음

(5) 신체손해배상책임(특수건물) 특별약관 및 화재대물배상책임(특수건물)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하여야 함

(6) 신체손해배상책임(특수건물) 특별약관 및 화재대물배상책임(특수건물) 특별약관은 아래의 특별약관과 동시에 가입할 수 없음

· 임차자(화재,폭발파열,소요노동쟁의)배상책임(비례보상) · 화재배상책임(500m^2이하)

(7) (갱신형)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 및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은 아래의 특별약관과 동시에 가입할 수 없음

· 화재배상책임(500m^2이하)

(8) (갱신형)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 및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음

(9) (갱신형)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은 주계약 보험기간 10년 만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고,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은 주계약 보험기간 3년 또는 5년 만기에 한하여 가입 가능할 수 있음

(10)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특별약관, 운전중교

통사고처리지원금Ⅱ(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및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Ⅴ(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음

(11) 운전중사고벌금(대인)(3천만원한도)(자가용) 특별약관 및 운전중사고벌금(대인)(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자가용) 및 운전중사고벌금(대인)(2천만원한도)(자가용)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음

(12) 도난손해(일반가재) 특별약관 및 급배수설비누출손해(일반가재) 특별약관은 보험목적이 일반가재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음

(13) 직업, 직무상 영업용 운전자는 아래 담보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음

가. 대상담보

·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
· 화재손해(실손보상)
· 붕괴침강및사태손해(실손보상)
· 도난손해(일반가재)
· 급배수설비누출손해(일반가재)
· 지진손해(비례보상)
· 전기손해(비례보상)
· 풍수재손해(특수건물,실손보상)
· 신체손해배상책임(특수건물)
· 화재대물배상책임(특수건물)
· 임차자(화재,폭발파열,소요노동쟁의)배상책임(비례보상)
· 화재배상책임(500m^2이하)
·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 1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14)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① 적용근거 :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② 적용범위 : 이 특약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음.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소득세법시행령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③ 관련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름

④ 회사는 이 특약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못함.

⑤ 신규계약은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시 이 특약을 신청하고 청약시 최초 납입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처리 가능.

⑥ 비영구 장애의 장애기간 종료 후, 다시 장애인이 된 경우는 장애인전용보험 재신청 및 전환가능.

⑦ 이 특약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당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장성보험에 부가

하되,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도 전환 특약 가입 신청 시 전환 가능

(15) 판매채널 : 범용(금융기관보험대리점(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제외)을 통한 판매는 제외)